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1. 귀 협회(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준공 후 유출지하수가 지속 발생 시에는 이용계획을 수립·신고*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1개소당 지하수가 1일 30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특·광역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1동당 지하수가 1일 3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3. 2013년에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소대책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하철 역사 등 지하구조물과 대형 건축물에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시행·신고와 이용계획 수립·신고를 하여 한정적인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 협회(학회)에 소속된 관련 회원(사), 기업 등에게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_중앙회, 한국주택협회장, 한국건축시공학회장, (사)대한토목학회, (사단)한국지반공학회,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장,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

주무관 **황유민** 시설사무관 **조광영** 과장 전결 2020. 9. 10.
박병언

협조자

시행 토양지하수과-2338 (2020. 9. 11.) 접수

우 30103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180 팩스번호 044-201-7189 / ghkd1104@me.go.kr / 비공개(5)